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618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2.

발의자 : 홍석준 · 김용판 · 최춘식
김정재 · 백종현 · 박덕흠
지성호 · 윤창현 · 김영선
하영제 · 金炳旭 · 조경태
한무경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 하지만,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,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단서 신설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분할”을 “분할.”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5條(變更許可 등) ① 放送事業者·中繼有線放送事業者·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は 다음 각號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5항, 제6항, 제8항, 제10항 및 제11항을準用한다.	第15條(變更許可 등) ① -----
1. 해당 法人の 합병 및 분할 <u><단서 신설></u>	1. -----분할. 다만,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2. ~ 7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